

파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하수처리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파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을 충족하고, 기술성·경제성 및 유지관리가 우수한 최적의 하수처리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22일

파주시장

1. 공법선정 제안 개요

가. 제 안 명 : 파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하수처리공법 기술제안서

나. 시행기관 : 파주시 환경국 하수도과

다. 기술제안 대상시설

1) 위 치 : 파평 공공하수처리시설(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271-4 일원)

2) 기술제안내용

- 파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Q=1,200\text{m}^3/\text{일}$ (증설)

(기존: $Q=1,300\text{m}^3/\text{일}$, 증설: $Q=1,200\text{m}^3/\text{일} \rightarrow$ 전체 $2,500\text{m}^3/\text{일}$)

- ※ 계획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반드시 계획부지 내에서 시공이 가능하고 유지관리 동선 확보가 가능한 시설배치계획 제시(측량도에서 제시된 부지내에 시설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정한 설계조건을 준수하고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기술제안
- ※ 증설 시설용량 및 계획수질은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에 따라 설계를 수행하여야 함
- ※ 증설공사 중 기존 처리시설의 유입하수 정상처리(무중단)가 가능하도록 증설 하수처리공법을 제안하여야 함

2. 참가자격

- 가. 국내에서 시설용량 **400㎥/일** 규모 이상의 공공 및 개인 하수 또는 폐수처리시설에서 1년 이상 정상가동실적을 보유한 공법이거나,
-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한 환경신기술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공법(공법선정 대상 시설용량이 환경신기술을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0배 이내인 경우 인정)에 한하며,
- 다. 특허 또는 신기술 등의 권리행사에 제한사항이 없는 업체
- ※ 특허공법으로 참여할 경우 전용실시권자 또는 특허권자만 참가를 허용
(즉, 통상실시권자에만 해당될 시에는 참가자격 미충족으로 간주함)
 - ※ 환경신기술 공법으로 참여할 경우 기술개발(보유)자만 참가를 허용(즉, 환경신기술에 대한 사용협약자에만 해당될 시에는 참가자격 미충족으로 간주함)
 - ※ 정상가동실적 인정기간은 “2025년 1월 ~ 2025년 12월” 로 규정함
 - ※ 정상가동실적 중 제출 가동기간 내 방류수질 초과 및 관계기관 미날인, 양식변경 등 결격사유가 없는 실적이 1건 이상 있어야 함.
 - ※ 정상가동실적은 주처리공법에 한해서만 평가하며, 환경신기술 또는 특허와 동일한 공법(금회 제안공정과 동일한 처리공정으로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 인정함)이어야 하며, 동일한 공법이라도 금회 제안 공정이 정상가동실적을 제출한 시설의 처리공정과 다르면 인정 불가
 - ※ 환경신기술 획득에 따른 가동실적이 없는 경우 신기술 검증시 제출한 운영실적(6개월 이상)을 대상으로 평가
- 라. 금회 증설 처리시설 최종 방류수의 성능보증을 위하여 하수 고도처리공법을 보유한 법인사업자(대표사)는 필요 시 주 처리공정과 총인처리공정의 조합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성능보증을 위하여 처리공법 보유사와 공동제안 시 공법보유사간 공동협약 (처리수질 보증 및 책임한계 명시)을 첨부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최종 방류수(Q=1,200㎥/일)의 성능보증수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마. 기술 및 공법보유업체가 다수일 경우 동일 공법으로 중복참여 불가하며(총인처리 또는 3차 처리공법 포함) 업체가 다수공법을 보유하였다하더라도 한 개의 공법으로만 참여가능하며 중복참여 시 평가에서 제외함.
- 바. 가~마 항을 모두 만족하는 공법보유자 또는 업체

3.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기술제안서 참가등록 : 2026년 07월 29일(수) (09:00 ~ 17:00)

나. 기술제안서 제출 : 2026년 08월 21일(금) (09:00 ~ 17:00)

다. 참가등록 및 제출 장소 : 파주시 환경국 하수도과 하수시설팀(방문접수에 한함)

라. 제출서류

구 분	기술제안서 참가등록	기술제안서 제출
제 출 서 류	- 기술제안 참가신청서 (회사대표 공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 (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사업자등록증 - 공법보유증명서 (특허, 환경신기술 인증서 및 검증서를 포함한 증명서) - 공법개요 및 요약 설명서 - 대리인 등록시 업체 대표의 위임장 - 대리인 등록자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 참가자격 증명서류 (1년이상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포함)	- 기술제안서 제출 공문(회사대표 공문) -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기술제안서 각 11부 : 원본 1 부, 사본 10부, 전산파일 2set(USB) - 기술제안서 (본문) - 기술제안서 (부록) ※ 원본 1부에만 제안사명 표기 - 제안사명이 표기되는 모든 서류는 원본에만 표기 - 사본에는 공법사 등을 나타내는 어떤 표기 (문자, 기호, 이미지, 특허번호, 신기술번호, 실적제시 시 해당처리시설 명칭 제시 등) 도 불가하며, 표기 시 공정한 평가가 불가하므로 5점 감점 - 대리인 등록 시 업체 대표의 위임장 - 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 기술제안서는 회사대표 공문으로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기술제안서 원본만 제안사 및 공법명 표기

※ 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여 기술제안서 제출 가능

4.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관련서식은 공고문 붙임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고 반드시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기술제안의 내용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의 설계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우리 시에서 기술제안서의 중대한 오류, 허위여부, 기존 시설과의 호환성, 공사 실현 가능성 등을 위주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설계조건에 벗어나는 경우 우리시의 판단 하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참가업체는 이에 대한 이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다. 기술제안서는 원본 1부와 사본 10부를 제출하되, 원본에 대표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금회 선정된 공법에 대해서는 별도 개별통보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평가제외, 선정취소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마. 우리 시에서 1차 평가 (경제성, 공법사의 적정성 등 기관평가항목) 후 평가 결과 상위 5개 업체에 대해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에서 2차 평가 (기술 분야 등 위원평가항목)를 하며, 최종평가는 1차 및 2차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1개 업체를 최종 선정합니다. (기술제안 참가업체가 5개 미만일 경우에는 1차 평가 적격 업체에 한하여 2차 평가를 시행)
- 바. 최종(1차·2차 점수 합산) 평가 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성 분야’의 고득점자로 결정하고 ‘기술성 분야’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경제성 분야’의 공사비, 유지관리비, 에너지사용량 순서의 고득점자로 결정합니다.
- 사. 공법제안업체(참가등록업체)가 1개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 아.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서에 제시된 양식 외에도 제안공법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부록에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 우리시 여건 및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용량변경, 일부 공정의 제외 또는 사업계획 등이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향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 최종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는 30일 이내에 우리시와 기술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시 선정취소와 함께 차 순위 업체를 선정합니다.
- 카. 공법채택에 따른 시공권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타.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 시 기술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 또한 하수처리공법 및 총인처리공법에 대한 특허 소송 및 분쟁에 관련된 업체는 참가를 제한하며, 참가 시 평가대상에 제외합니다.
- 파. 제안서에 명기된 공사비와 유지관리비 산정 검토결과 누락 등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임의 조정하여 검토하며 감점대상에 해당 됩니다.
- 하. 공법이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 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만약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특히 유지관리비 경우 현장조건 및 제반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 후 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지관리 시 유지관리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법사에서 지불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관련기관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너. 본 공법선정과정을 통해 선정된 공법이 향후 가동 시 제시된 보증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되는 경우 기술제안업체에 시설개선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더. 기초자료(도면 등)는 우리시로 공문발송(기초자료 배포요청)시 제공할 예정이며, 기초자료(도면 등)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참고용 자료로서 공법사는 배포자료를 검토하여

사용 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하며, 시행기관은 참고용으로 배포한 자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러. 질의사항은 **2026년 08월 04일(화요일) 16:00**(e-mail : hn0812@korea.kr)까지 우리시에
질의자의 회사명,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 서면(공문포함)으로 1회에 한하여 질의할
수 있으며, 질의 답변사항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의 일부로서 모든 제안자에게 같은
효력이 있으며 **질의사항 및 답변서는 모든 회사에게 일괄적으로 배포합니다.**
- 며. **공고에 관하여 발생하는 이견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도록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과주시 환경국 하수도과 하수시설팀(☎031-940-552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식.
2.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식. 끝.